

auri brief.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No. 176

2018. 7. 15

일본의 경관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 시사점

이상민 연구위원, 이여경 부연구위원

| 요약

- 일본의 경관법은 2004년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였으며, 부처별로 해당 업무를 수행
- 국토교통성은 직접 국토경관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
- 일본의 경관계획 수립이나 경관관리 주체는 기초지자체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관여하며, 도쿄도(광역지자체)는 경관정책 수립 및 경관관리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나 자치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할 시 경관관리의 권한을 이관
- 요코하마시(기초지자체)는 1970년대부터 전문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도입하였으며, 3개의 경관추진 지구를 지정,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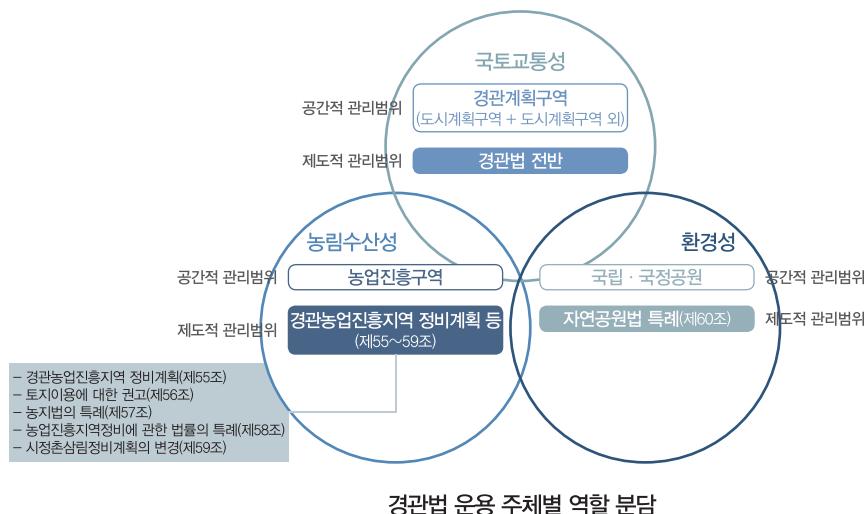
| 시사점

- 효과적인 경관정책 추진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관련 주체별 명확한 역할 구분과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국가는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경관관리 제도의 운영은 실행 주체로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지자체는 경관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관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

1 일본의 경관관리제도¹⁾

■ 경관법 도입 과정과 특성

- 1970년대부터 경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 지자체가 자주조례를 근거로 독자적인 경관시책을 추진
 - 지자체의 경관시책 추진 과정에서 근거법 부재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경관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
 - 국토교통성이 2003년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대강(美しい國づくり政策大綱)’을 발표하고, 2004년 경관법을 제정
-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경관법 제정
 - 국토교통성은 경관계획구역(도시계획구역 내 및 도시계획구역 외), 농림수산성은 농업진흥지역 내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구역, 환경성은 국립·국정공원 등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²⁾



※ 출처 : 이상민 외(2015),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p.187.

• 경관법의 주요 내용

- 일본의 경관법은 ①경관행정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②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경관지구, 준경관지구, 지구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 의장 제한 등 경관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중요 건조물, 중요 수목, 중요

1) 일본 출장을 통한 담당공무원 면담 시(2017.12.14.) 구득한 자료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2) 이상민 외(2015), 「국토경관 향상을 위한 농촌 경관관리체계 개선 연구」, p.191.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경관협정, ⑥경관정비기구, ⑦세계상 특례조치(소득세·법인세) 등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음

- 경관법의 실행 주체

- 경관법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는 '경관행정단체'로 인정받은 지자체(도도부현, 지정도시, 중핵시, 시정촌 등)이며, 국토교통성은 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과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

- 경관법 운용을 위한 다양한 수단 도입

- 국토교통성은 지자체가 경관법을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가이드북,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

경관법 운용을 위한 다양한 수단

구분	주요 내용
경관법 운영지침 (2016년 3월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정책 추진 시 법의 해석·운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원칙을 제시하고, 법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설명하는 지침 • 경관행정단체, 종합성과 일체성 확보, 관련 행정과의 연계, 시의적절한 계획의 재검토, 정보 공개의 촉진, 지식의 보급, 인재 육성 및 전문가 활용 등을 명시
경관법 가이드북 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공공단체 설정을 고려하여 경관계획 수립이나 제도 활용 시 참고할 수 있는 설명서 • 경관법 제정 배경, 경관행정의 의미와 역할,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적 사항 등을 사례와 함께 소개
경관형성기준 등 객관성을 높이는 연구 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운용에 필요한 구역과 제한 내용, 처분 등 판단지표 설정에 있어서 학술지식과 실태조사 결과 등 기술적 지식을 근거로 경관형성기준 등 객관성을 높이는 연구사례를 정리
경관중요공공시설 지침(안)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계획을 수립, 변경하고자 하는 경관행정단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관중요공공시설 관련 제도 개요, 검토·협의 내용과 방법,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한 지침 • 경관중요공공시설 관련 선진사례, 경관중요공공시설에 관한 검토 방법, 공공시설 관리자와의 협의 내용과 방법 등 포함
경관형성의 대처에 관한 조사 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법, 옥외광고물법 관련 제도의 활용 현황, 광역적인 경관형성 대책 상황 등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조사 대상 및 유료회답수를 각 조사항목별로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경관에 관한 검토·조사보고서 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호한 경관 형성 및 경관형성기준의 효과적 운용과 광역적 경관형성 대책 검토 등을 위해 실시한 연구·조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 거주기능·도시기능의 유도와 연계한 경관시책검토조사, 관민연계에 의한 양호한 경관형성방책 검토조사, 도시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비용 평가 등에 관한 검토조사, 매력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경관시책의 방식 등 검토조사, 지역경관만들기 긴급 지원사업, 경관형성 경제적 가치 분석에 관한 검토, 경관형성에 관한 보급방책 검토 등

■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과 수립 현황

- 경관계획 수립 주체

- 일본의 경관계획은 '경관행정단체'로 인정받은 기초지자체가 수립할 수 있으며, 기초지자체 역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역지자체가 대신 수립 가능

3) 國土交通省(2012), 「景觀法アドバイザリーブックの公表について」, [\(검색일자: 2018.2.1.\)](http://www.mlit.go.jp/toshi/townscape/crd_townscape_th_000011.htm)

4) 國土交通省, 「景觀形成基準等の客觀性を高める工夫事例」, [\(검색일자: 2018.2.1.\)](http://www.mlit.go.jp/toshi/keikanhoukyakkasei.html)

5) 國土交通省, 「景觀重要公共施設の手引き(案)」, p.4.

6) 國土交通省(2011), 「景觀形成的取組に關する調査」, [\(검색일자: 2018.2.1.\)](http://www.mlit.go.jp/toshi/townscape/keikanhoukayouikou.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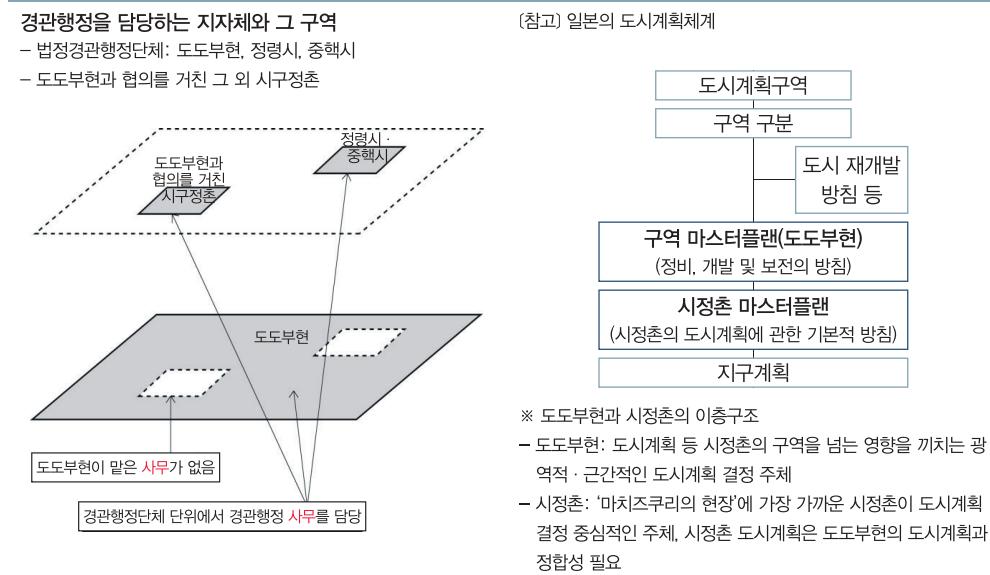
7) 國土交通省, 「景觀まちづくり主な施策-景觀に關する検討・調査報告書」, [\(검색일자: 2018.2.1.\)](http://www.mlit.go.jp/toshi/kenkanhoukentou.html)

•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 일본의 경관계획은 경관계획의 구역 확정(경관계획구역),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한 행위 제한(경관형성기준), 경관중요건조물 또는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방침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수립

• 경관계획 수립 현황

- 2017년 기준 1,741개 지자체 중 경관행정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약 700개로, 538개 지자체에서 경관계획을 수립
- 전국 지자체의 약 30%가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0 도쿄올림픽 개최 시까지 900개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목표



경관법에 따른 각 행정단체의 역할

※ 출처 : 국토교통성 내부자료

■ 기타 경관인식 제고 방안

• 시상제도: 도시경관대상⁸⁾

- (도시공간 부문, 경관마치즈쿠리 활동 · 교육 부문) 공공공간과 건축물이 통합적으로 뛰어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공부문'과 지역민 스스로 경관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활동을 대상으로 '경관마치즈쿠리 활동 · 교육부문'에 대해 각각 표창

8) 國土交通省, 「都市景觀大賞」,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2.html(검색일자: 2018.2.5.)

- (아름다운 거리상, 2001~2010)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고 가꾸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개선한 지구에 대해 표창
- (도시경관 100선, 1991~2000) 도시공간 구성부터 의장까지 총체적인 도시환경이 뛰어난 지구나 도시공간 디자인의 수준이 높은 지구를 표창하며, 매년 10개 지구씩 총 100개 지구를 선정
- 교육제도: 경관 마치즈쿠리 교육⁹⁾
 - 많은 사람이 경관 마치즈쿠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학생·시민을 대상으로 경관 마치즈쿠리 관련 교육을 실시, 교육 지침 및 강좌 사례집을 발간
- 홍보방안
 - (경관의 날 제정¹⁰⁾) 경관법이 전면 시행된 2005년 6월 1일을 기념하여 경관법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및 환경성이 함께 경관의 날을 지정
 - (경관 포털사이트 운영¹¹⁾) 경관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각 시책과 지역별 정보, 경관자원과 관련 데이터베이스,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지방 정비국 등의 사이트와 그 외 관련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관 관련 정책 홈페이지를 함께 링크

2 도쿄도(광역지자체 차원)의 경관관리제도¹²⁾

■ 도쿄도 경관관리제도의 특성

- 도쿄도 경관관리제도의 변천¹³⁾
 - 도쿄도는 1994년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1997년 자주조례로 도쿄도 경관 조례를 제정
 - 2004년 경관법 제정 이후에는 위임조례로서 도쿄도 경관조례를 전면 개정(2006)하고, 2007년 도쿄도 경관계획을 수립
- 도쿄도 경관관리의 목적과 방향
 - 도쿄도는 수도로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건축물 조성을 중점적으로 관리

9) 國土交通省, 「景觀まちづくり教育」, <http://www.mlit.go.jp/crd/townscape/gakushu/index.htm>(검색일자: 2018.2.9.)

10) 國土交通省, 「6月1日は景觀の日」,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ik_000019.htm(검색일자: 2018.2.9.)

11) 國土交通省, 「景觀ポータルサイト」,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ik_000016.htm(검색일자: 2018.2.9.)

12) 일본 출장을 통한 담당공무원 면담 시(2017.12.15.) 구득한 자료와 도쿄도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13) 도쿄도 내부자료

- 특히 역사적 경관 형성을 위해 수도 도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전망 보전, 민간사업자 와의 협의에 의한 수도경관 형성, 황궁 주변의 품격 있는 경관 유도,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한 역사적 경관의 보존·복원,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활용 등을 강조

• 경관관리 주체로서 도쿄도와 자치구와의 관계

- 도쿄도는 전체적인 경관전략 및 경관관리의 틀을 제시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도쿄도의 경관계획을 준용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 도쿄도 내 경관계획을 수립한 10개의 자치구는 계획에 따라 경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경관계획 미수립 자치구는 도쿄도가 직접 경관을 관리하나 자치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할 시 도쿄도는 해당 자치구에 경관행정업무를 이관

■ 도쿄도의 경관행정체계

• 도쿄도의 경관 담당 주무부서는 도시정비국 녹지경관과

- 경관행정업무 담당 인원은 총 7명으로 건축 5명, 토목 1명, 조명 1명으로 구성
- 예산의 대부분은 경관심의회 운영과 홍보 책자 등에 사용되며, 별도의 경관사업 예산을 마련하지 않음
- 경관심의회 운영 시에 전문가를 활용하며, 경관심의회는 전체회의를 연 2회, 분과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 도쿄도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 도쿄도 경관계획에서는 대규모 건축물의 사전협의제도, 신고제도, 역사적 경관형성 방안, 공공사업의 경관형성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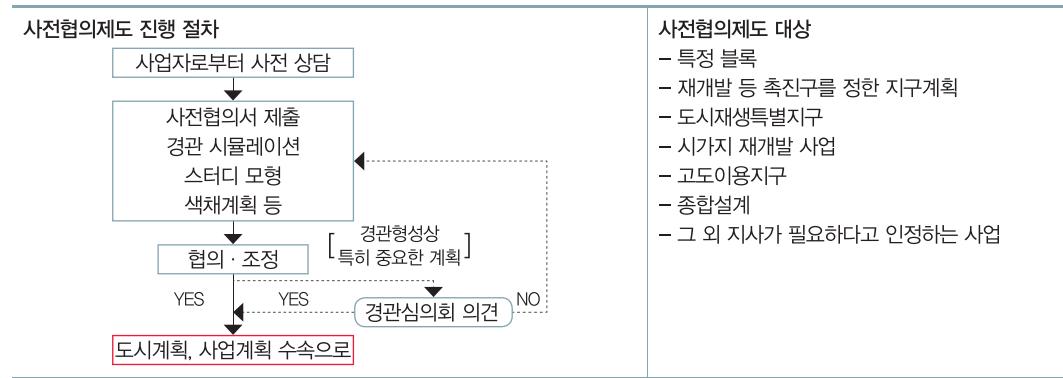
• 경관계획 실행 수단

-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또는 지구에 대해 건축물의 형태·높이·의장·색채·옥외 광고물 등을 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 조례에 따른 권고·명령, 지침에 따른 요청 등의 실행 수단을 활용

■ 도쿄도의 주요 경관관리 수단

• 대규모 건축물의 사전협의제도

- 대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향 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전에 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로, 도쿄도 고유의 권한
- 사전협의대상은 재개발 촉진지구, 도시재생특별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 종합설계 등 경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도쿄도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진행 절차 및 대상

※ 출처 : 도쿄도 내부자료

도쿄도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리 수단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규제 또는 협의 내용			실행 수단
		형태, 높이, 의장 등	색채	옥외광고물	
대규모 건축물 사전협의제도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도시재생특별지구, 종합설계 등) · 궁성 주변, 도시재생 사업 디자인 협의 · 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조망 보전			· 옥상 설치 전면 금지 · 벽면 표시 네온 규제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
신고제도	경관형성 특별지구 · 수변 주변 등 관광 진흥을 도모하는 지구 · 문화재 정원 주변 등 조망 보전을 도모하는 지구	지역 경관 특성에 근거한 유도 사용 가능한 색채 범위 지정		· 조례에 따른 권고 · 명령 · 광고물은 허가	조례에 따른 권고 · 명령
	경관 기본축 임해, 스미다강, 다마가와조스이, 쿄쿠분지 가이센, 카미다강, 구릉지 → 3~5층 이상 건축물 등				
	그 외 · 구 지역: 높이 60m 이상 건축물 등 · 타마 지역: 높이 45m 이상 건축물 등				
역사적 경관 형성	· 역사적 건조물 선정 · 역사적 경관형성 지침	주변 경관과의 조화 요청		지침에 따른 요청	
공공사업 경관 형성	· 경관중요공공시설 지정 · 공공사업 경관형성 지침				

※ 출처 : 도쿄도 내부자료

• 신고제도

- 도쿄도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경관형성특별지구, 경관기본축,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구 특성에 따라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경관심의회를 운영

• 역사적 경관 형성 및 수도 도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조망 보전

- 수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조망을 보전하기 위해 역사적 경관형성 지침을 마련하고 메이지신궁 시계노리기념회 회관, 국회의사당, 영빈관,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 4개 건축물 배후지에 계획된 건축물 높이와 광고물 등을 규제

수도 도쿄를 상징하는 건축물의 전망 보전 예시



메이지신궁 시게노리기념회 회관

국회의사당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복원 후)

※ 출처 : 도쿄도 내부자료

• 공공사업의 경관형성

- 경관적으로 중요한 공공시설물을 ‘경관중요공공시설’(미유키도오리, 스미다강 등)로 지정, 도쿄도가 마련한 공공사업에 대한 경관형성지침을 준용

• 경관관리를 위한 색채기준

- 경관법 제정 이후, 도쿄도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변경명령 시행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색채기준을 마련
- 원색에 가까운 고채도의 색채는 피하고, 하늘색과 수목의 녹색, 흙과 돌 등의 자연 색과 어울리기 쉬우며, 난색계의 저채도 색채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함
- 경관기본축, 경관형성특별지구, 대규모 건축물 등에 대해 지역 특성, 개발 규모를 감안한 색채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권고 · 변경 명령의 대상

3 요코하마시(기초지자체 차원)의 경관관리제도¹⁴⁾

■ 요코하마시 경관관리제도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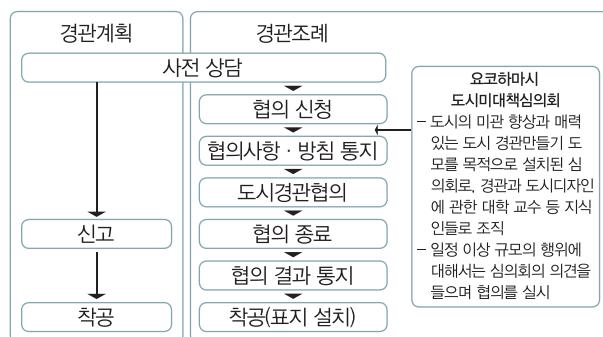
- 요코하마시 경관관리제도 도입 과정과 추진 방향
 - 1960년대 말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도시개발정책을 질적 환경을 추구하는 시책으로 전환, 1970년대부터 선도적인 도시디자인 행정을 도입
 - 1990년대까지 도심부를 중심으로 미나토미라이21 · 칸나이 · 이세자카몰 · 모토마치 등 정비사업을 통한 기능 강화, 부도심과 지역거점의 공공시설 정비, 재개발 · 민간 개발 유도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공원, 보행자와 녹지가로의 정비, 녹지보전, 역사문화를 살린 도시 매력 만들기를 추진

14) 일본 출장을 통한 담당 공무원 면담 시(2017.12.14.) 구득한 자료와 요코하마시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2000년대 이후 도시디자인 시책이 성과를 거두면서 물리적 도시디자인을 넘어 문화 창조를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도입, 워트프론트 정비, 예술가 창작공간 제공, 문화 테마의 설정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콘텐츠 개발로 문화디자인도시의 위상을 정립

• 요코하마시 경관관리제도 현황과 주요 내용

- 2006년 요코하마시는 ‘요코하마시 경관비전’을 수립하고, 경관조례로 ‘요코하마시, 매력 있는 도시경관의 창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시행
- 경관비전을 바탕으로 ‘경관추진지구’(3개)를 선정, 지구별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형태와 색채 · 높이 등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
- 또한 ‘도시경관협의지구’(3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기준을 경관조례에 마련, 지구 내 사업 추진 시 협의
-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특정경관형성 역사적 건조물 제도’를 운영, 역사적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경관심의회 자문을 받아 시행



요코하마시 도시경관협의지구 조례에 따른 협의진행 절차

※ 출처 : 요코하마시 내부자료

■ 요코하마시의 경관행정체계

- **요코하마시의 경관 담당 주무부서는 도시디자인실과 경관조정과**
 - 2004년 경관법 제정 이후 기존의 도시디자인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도시디자인실)와 경관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부서(경관조정과)로 이원화하여 운영
- **도시디자인실의 구성 및 주요 업무**
 - 총 9인으로 디자인기획 및 조정 담당 5인, 역사건조물과 마을만들기 담당 4인
 - 도시디자인 전문직제를 도입하여 전임 담당자가 40년간 업무 수행한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전수하였으며, 현재 그 후임자가 11년째 업무를 수행

- 요코하마시의 전반적인 도시디자인정책과 마스터플랜 수립, 주요 공공사업의 경관 관리 방안 제시, 각 부서별 사업 추진 시 디자인 조언 등을 담당

- 경관조정과의 구성 및 주요 업무

- 총 11인으로 경관조정업무 담당 3인, 옥외광고물 담당 7인으로 구성
- 경관제도 운영과 옥외광고물 관리, 경관계획 수립, 경관지구 지정, 도시미대책심의회 운영, 경관교육 및 포상제도 운영 등을 담당

■ 요코하마시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

- 요코하마시는 시 전체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을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구, 경관관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경관계획을 각각 수립
 - 3개의 경관추진지구(칸나이지구, 미나토미라이21 중앙지구, 미나토미라이21 신항 지구)는 별도의 경관계획을 각각 수립함
 - 관리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녹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경관계획’을 수립
-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의 주요 내용
 - (경관의 장래상) 매력적인 거리 형성, 쾌적한 보행자공간의 경관 형성, 역사적 경관 자원의 보전과 활용에 의한 경관 형성, 수변과 녹지의 보전 및 활용에 의한 경관 형성, 옥외광고물의 경관적 배려, 생활공간의 경관 형성, 상상력이 크게 다루어져 스토리가 느껴지는 경관 형성을 미래상으로 제시
 - (경관중요건조물 지정 방침) 미나토마치와 이국의 문화를 전해주는 건조물, 요코하마 발전의 역사를 전해주는 건조물, 습지와 야산 등의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형태 의장의 건조물, 지역의 개성과 매력 있는 거리를 구성하는 형태의 의장의 건조물 등을 경관주요건조물로 지정
 - (경관중요수목 지정 방침) 공공시설의 녹지를 보완하고 녹지 연단을 형성하는 수목, 나무 그늘을 만들고 편안함과 휴식 공간을 창출하는 수목, 지역의 역사를 전해주는 수목, 지역의 특징적인 거리를 구성하는 수목 등을 경관주요수목으로 지정
- 경관추진지구별 경관계획
 - 경관법을 준용하되, 크게 ①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방침, ②지구별 방침, ③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④경관중요건조물 및 경관중요수목 지정, ⑤옥외광고물 관련 행위 제한, ⑥경관중요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

■ 요코하마시의 주요 경관관리 수단

- 경관심의회
 - 조례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가, 시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경관심의회를 운영
 - 대규모 사업 추진 시에는 전문가 자문제도(advisory)를 적용, 3개의 경관추진지구 내 개발 행위 시 분야별로 전문가 1명씩을 지정
- 특정경관형성 역사적 건조물 제도
 - 역사성 있는 건축물과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
 - 용도변경 시 문제가 발생하면 경관심의회 전문가 자문제도 등을 통해 진행
- 경관교육 프로그램
 - 2017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을의 좋은 장소 찾기 등 경관교육 프로그램을 교사와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소요 비용은 중앙정부가 지원

4 일본 경관정책의 특성과 국내 시사점

- 경관법을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발의 · 운영
 - 일본의 경관법은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환경성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정하고 운영도 각 부처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
-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된 경관계획과 경관관리
 -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에 따라 위계별로 관리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이나, 경관 계획은 마을만들기 원칙에 따라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
 - 경관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며,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만 광역지자체가 관리
- 경관관리 주체 간 협력네트워크 형성
 - 실제 경관을 관리하는 지자체 간 정보교류와 협업을 위해 ‘전국경관협의회’를 개최
 - 도도부현이 주도하는 경관 관련 부서 간 협의회로, 서로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연 3회 정도 개최되는데 이때 국토교통성도 참석

- 중앙정부의 경관관리 특징
 - 국가가 직접 국토경관 전반을 관리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경관관리를 지원
 - 국토교통성은 가이드북 제작 등 경관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거나 지자체 경관관리 모니터링, 우수사례 발굴 등 주로 교육, 홍보 업무를 수행
- 도쿄도(광역지자체)의 경관관리 특징
 - 도쿄도는 경관정책 수립 및 경관관리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나 소관 자치구가 경관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경관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
 - 도쿄도 경관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경관관리 수단으로는 대규모 건축물 사전협의 제도, 신고제도, 역사적 경관형성 및 공공사업 경관형성 방안, 색채기준 등이 있음
- 요코하마시(기초지자체)의 경관관리 특징
 - 1970년대부터 전문가를 활용하여 경관관리를 위한 디자인 행정을 도입, 운영
 -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할 경관추진지구에 대해서만 계획을 수립 ·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경관교육을 시행

이상민 연구위원 (044-417-9642, smlee@auri.re.kr)
이여경 부연구위원 (044-417-9655, yklee@auri.re.kr)

